

의안번호	제 198 호
의 결 연 월 일	2011년 7월 22일 (제 302 회)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영주 의원 외 6인
발의연월일	2011년 7월 1일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8
----------	-----

발의연월일 : 2011년 7월 1일

발 의 자 : 김영주 의원

최병윤·김양희·박종성
정지숙·유완백·노광기의원

1. 개정이유

- 청남대는 도소속 기관임에도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 청남대 관광활성화 자문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청남대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
- 승용차 입장 실시, 야간개장 등 청남대 관광활성화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신설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나. 운영위원회 삭제(안 제2조)

-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다.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안 제3조)

- 매표시간 : 08:30분부터 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
- 관람시간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정 가능

라. 무료입장권(안 제4조제4항)

- 지역상가 15만원 구입시 무료입장권 2매
→ 10만원 구입시

마. 사용료 반환(안 제10조)

- 사용개시일 전 : 10%를 공제한 잔액
- 사용개시일 이후 : 사용일 공제 후 잔액
- 사용일 이후 : 반환신청 불가

바. 관람료 징수(안 제12조)

- 공연, 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 징수

사. 주차료 징수(안 제13조)

구분		당일(1회당 요금)
16인승이상 승합차		3,000
15인승 이하 승합차		2,000
승용차		2,000
1,000cc 미만 경차		1,000
화물차	1톤초과	3,000
	1톤이하	2,000

아. 사무의 위탁(안 제14조)

- 주차장 운영관리 신설

- 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
 - 각호 → 각 호, 기타 → 그 밖에 등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 나. 관련부서 의견수렴 : 의견수렴 과정 거침
-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라. 예산조치 : 예산조치사항 없음.
- 마.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바. 부패영향평가 : 이견 없음.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남대 관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청남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등 설치) ① 충청북도청남대(이하 “청남대”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청남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청남대와 주변지역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기능·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개관 및 관람시간) ① 청남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및 매주 월요일

2. 시설의 보수, 공사, 재해복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청남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09시부터 18시까지

2.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 09시부터 17시까지

③ 입장권 매표시간은 08:30부터 관람 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입장료) ① 청남대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

1. 국민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
2. 6세 이하의 영·유아
3.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4.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자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해당하는 자
8.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자
9.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6급까지의 장애인에 한하며 단, 1~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
10.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
11.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

1.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 단체입장료에 준함
2. 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각종 기관 단체 및 사업체의 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확인서 등)을 소지한 개인·단체가 익일 까지 입장할 때 : 별표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입장권을 지급 할 수 있다.

1. 관광버스로 단체입장 하는 경우 : 관람객 15명당 1매
 2.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고, 당일 그 영수증(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제시하는 경우 : 2매
- ⑤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금지 및 행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 한다.

1.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2. 안전관리상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
-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정된 장소 외 흡연 또는 취사행위
 2. 지정된 전시물 외의 전시물을 만지거나 통제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음주 및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야생화 및 산나물 채취행위

제6조(요금표 등 게시) 소장은 매표소 부근에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 ① 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운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장
2. 각종 문화 예술공연 및 행사
3. 야외예식장(야외 웨딩촬영 포함)

4. 영화, 드라마, 광고(CF) 등 촬영
 5. 강당, 세미나, 회의실 등 부대시설
 6.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판매시설
 7. 그 밖에 청남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시설물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승인한다. 다만,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2. 충청북도가 후원, 협찬하는 공연 및 각종 행사
3.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문화예술행사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4. 수탁업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익상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남대의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소장이 공익상 관람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료 10%를 공제한 잔액
 2.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
- ②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1조(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남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 ③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청남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 및 체험물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2조(관람료 징수) ① 소장 및 제7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료는 소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주차료 징수) 소장은 청남대 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청남대 경비
2. 청남대 관광안내
3. 청남대 조경 식재 및 전문관리
4. 청남대 환경미화
5. 각종 문화·전시 행사
6. 주차장 운영 관리
7. 제7조제1항 각 호의 운영 및 관리 등

제15조(상표 등의 사용) ①청남대관리사업소가 등록한 상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거 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남대 홍보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③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청남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별표 1]

입 장 요 금 표

(단위 : 원)

구 분	주 간		야 간 (17:30분 이후 입장자)	비 고
	개 인	단 체		
어 른	5,000	4,000	4,000	19세 ~ 64세
청소년	4,000	3,000	3,000	13세 ~ 18세
군 경 등				하사 이하의 자와 전투경찰순경·의무소방원
어린이	3,000	2,000	2,000	7세 ~ 12세
노 인				65세 이상

[별표 2]

주 차 요 금 표

(단위 : 원)

구분	당일(1회당 요금)	
16인승 이상 승합차	3,000	
15인승 이하 승합차	2,000	
승용차	2,000	
1,000cc 미만 경차	1,000	
화물차	1톤초과	3,000
	1톤이하	2,000

[별표 3]

청남대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및 사용구분		장소 및 규모	사용료	비 고
본관	내부촬영	1층 2층	1,000,000	· 1일 10시간 기준(시간당10만원) · 드라마, 영화, 광고(CF) 촬영
	외부촬영	본관주변	100,000/ 1시간당	· 드라마, 영화, 광고(CF)촬영 ※ 내부촬영후 외부촬영은 별도 사용료 없음
기획전시관		관리동	30,000/일	냉·난방비 별도
세미나실		“	30,000 1회/2시간	“
회의실		“	20,000 1회/2시간	“
이벤트실		“	50,000/일	“
강 당		“	50,000/일	“
웨딩 촬영		청남대내	100,000	승용차 2대(5명 기준)
영화, 광고(CF) 촬영 등		청남대내	500,000	골프장, 헬기장 등 청남대내 시설 및 장소
야외 결혼식장		헬기장		하객1인당 단체입장료에 준한 사용료 징수

※ 야간 사용료는 100% 할증

■ 냉·난방비 기준

· 세미나실(1회 1시간 기준) : 난방비 40,000원, 냉방비 30,000원

■ 가산금 적용 : 매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 가산

■ 시설 사용료는 위 기재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 사용료는 상호협약에 의한다.

[별지 1]

공유재산(시설·상표) 사용(시설)·변경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전화 (FAX)	자택 (사무실)	
	대표자			휴대폰	
	주소				
신청사항	사용시설	기본시설		부속시설	마이크, 빔프로젝트, 냉·난방기, 기타
	사용목적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일간)				
변경신청	신청사유 : 변경사항 :				
입 장 료	유 대인	원	사용인원		명
	무 소인	원	(남 , 여)		
위와 같이 청남대 시설·상표를 사용(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불임 :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기관·단체) (인)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귀하					

공유재산(시설·상표) 사용(설치)·변경 허가증

기관(단체)명		대표자		전화 (FAX)	
주 소					
사용목적					
사용인원	명 (남 , 여)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	
사용재산					
위와 같이 청남대 시설·상표를 사용(설치)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장(직인)					

관련법령 발췌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